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등촌아리스타어린이집]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월 25일

미래·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2년 1월 6일

나. 제출자: 강서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2년 1월 17일

라. 상정일자: 제2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상정·의결(2022.1.25.)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김의진 가족정책과장)

가. 제안이유

등촌동 산업재생형 지구단위계획 복합개발부지에 기부채납시설로 신규 설치 예정인 “(가칭)구립 등촌아리스타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시설개요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m ²)	개원예정	정원
(가칭) 구립 등촌아리스타어린이집	양천로 614	906.68 (지하1층, 지상3층)	2022.9.	99

○ 위탁사무내용

- 어린이집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보육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 영유아 보호와 교육, 예산계획 및 집행 보육교직원 임용 및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
- 부모교육 및 가정과 지역사회간의 연계 및 교류

○ 위탁기간: 5년(2022. 9. 1. ~ 2027. 8. 31.)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경쟁모집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선정

○ 소요예산: 1,870,232천원/5년

(국비 521,272천원, 시비 917,615천원, 구비 431,345천원)

2) 추진일정

- 2022년 1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계획 수립
- 2022년 4월: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및 위탁 협약 체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시행규칙 24조의2
-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제27조, 29조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7조, 10조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허은옥)

- 본 동의안은 신규 설치 예정인 구립 등촌아리스타어린이집(가칭)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 등촌아리스타어린이집(가칭)은 등촌동 산업재생형 지구단위계획¹⁾ 복합개발부지의 기부채납시설로 양천로 614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1년 4월 서울시 제1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어린이집 확충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2022년 9월에 개원을 앞두고 있음
- 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기준에 의거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해당되고, 해당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지난 1월 5일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정’심의완료 하였음
- 어린이집 운영은 인적·물적 자원의 전문성과 다양한 운영 경험이 필요한 만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 수탁자에 대한 민간위탁 심의 시 어린이집 운영 실적, 원장의 전

1) 주거산업혼재지역에서 일자리 창출, 근무환경 개선과 주거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주거와 산업의 공생이 가능한 준공업 지역의 재생 유형 - 서울시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 이에 따라 ‘강서구 등촌동 633-12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C-1 복합개발부지(산업시설 50.25%, 공동주택 42.76%, 근린생활시설 6.99%)와 C-2 사회복지시설부지(어린이집)으로 구성 됨
→ 공동주택 부지 내 공동주택 4개동 136세대 입주예정

문성, 향후 운영계획 등 위탁이 적정한지 면밀히 심사하고 향후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붙임 1) 현황자료 1부.

2) 관계법령 1부.

참고 현황 자료

강서구 어린이집 현황(2021.12.31. 기준)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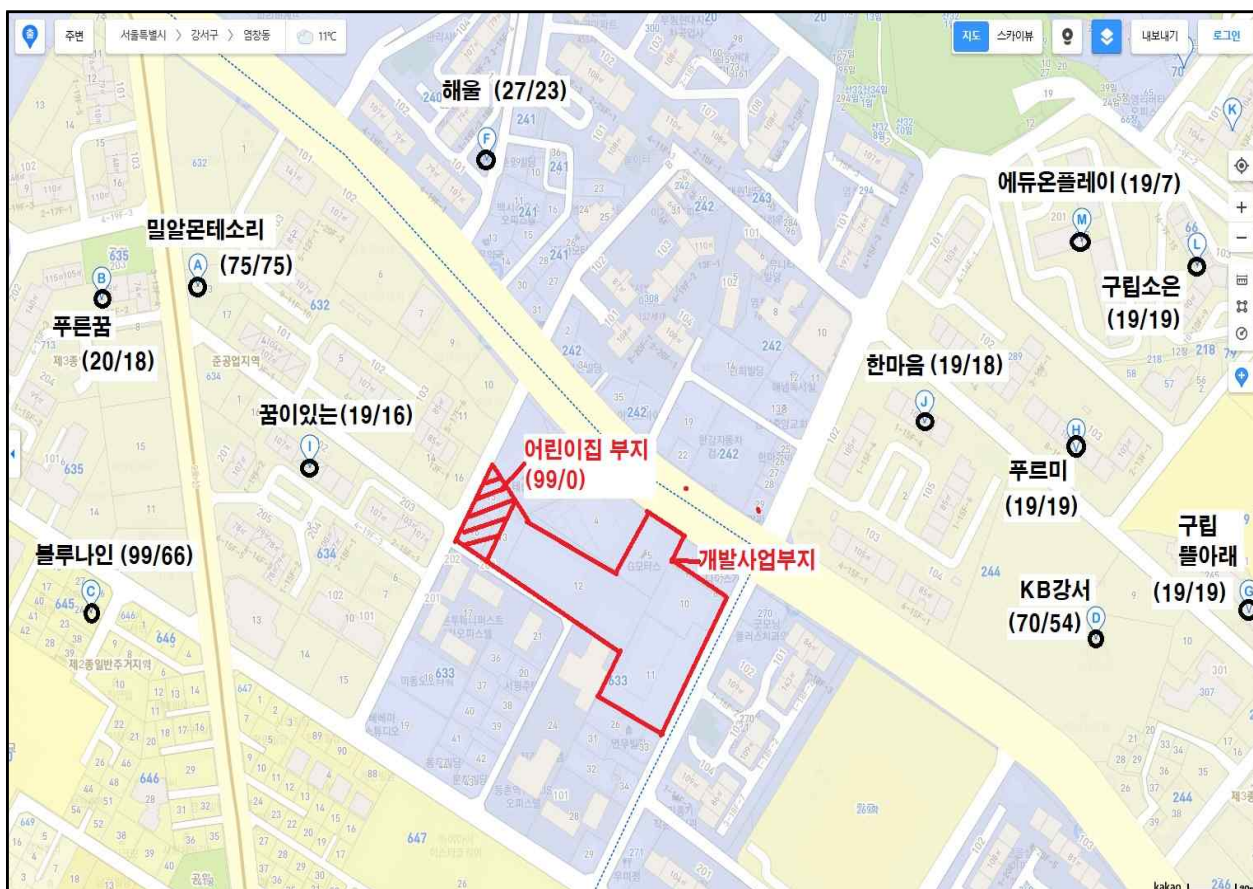
합계	국공립	법인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사회복지법인제외)	민간	가정	직장부모 협동
341	93	1	5	88	136	18

연도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추진실적

(단위: 개소)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예정)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설치 개소수	12	8	4	6
국공립 어린이집 총 개소수	83	90	93	99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율	28.4%	35.2%	39%	42%

(가칭)구립 등촌아리스타어린이집 위치도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나.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이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4. 그 밖에 공고, 위탁계약 등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제27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시설을 직접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로 선정한다.

③ 시설의 위탁에 있어 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방법·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위탁기간) ① 시설의 위탁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5년으로 한다.

② 시설의 재위탁은 한 차례만 한다. 다만,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등의 방법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지원한 단체, 개인의 경우 최초 위탁하고 협

약 기간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재위탁 기간 만료 후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정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청소년·아동·가족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1년 단위 이하로 계약하는 연례 반복적 사무는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2.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